

『2016년도 세출예산 (재)경북신용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2016년도 세출예산 (재)경북신용보증 출연 계획
 - 출자·출연 예정액 : 금500,000천원
 - 출연 필요성
 -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출연근거법령 :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보증재원)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 운영 중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소상공인 특례보증
 - 출연 예정액 : 금400,000천원(도비 200,000 시비 200,000)

○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 운영 중인 (재)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제공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